

# 이사회 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5.>

###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 장 구 성

###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3.11.>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장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위 기간 내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직무대행자를 정하기 위한 절차는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이사가 주재한다. <개정 2023.10.26.>

### 제 5 조의 2 (선임사외이사) <신설 2023.10.26.>

①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사외이사들간의 협의를 통해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선임사외이사 임기는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로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 소집 및 주재
2.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사외이사간의 소통 지원
3. 이사회 일정, 안건 등 이사회 운영 관련 협의

### 제 5 조의 3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11.>
-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서로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3.11.>

### 제 6 조 (감사의 출석 등) <삭제 2000.3.16.>

### 제 7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장 회 의

### 제 8 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일을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1.>

## 제 10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3.15.>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15.>

## 제 11 조 (질서유지)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4 장 부의사항

### 제 12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및 심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기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②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지급 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의 소각
6.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7. 자산 재평가 실시
8.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
9. 배당에 관한 사항
10.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1. 20 호로 변경
12.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신설 2017.3.24.>
13.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신설 2017.3.24.>
14.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신설 2017.3.24.>

1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의 5%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신설 2017.3.24.>
  16.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은 제외) <신설 2017.3.24.>
  17.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가지급 및 대여 (단,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는 제외) <신설 2017. 3. 24.>
  18. 건 별 자본금 5% 이상의 증여를 제공 <신설 2017.3.24.>
  19. 건 별 1 억원 이상의 대외후원금 <신설 2017. 3. 24.>
  2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 ③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2. 이사회 의장의 결정
  3.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 이사의 경업,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6. 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개폐 <신설 2013.3.15.>
- ④ 기타 경영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이사가 업무집행 상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요구한 사항 <개정 2002.3.25.>

### 제 13 조 (보고사항)

대표이사는 부의사항 이외에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5 장 위 입

### 제 14 조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제 15 조에서 정한 각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제 15 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 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⑤ 위원회에 대해서 제 9 조(이사회 소집), 제 10 조(결의방법) 및 17 조(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 조의 2 (경영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15 조의 3 (감사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15 조의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의 5(특별위원회) <신설 2026.4.27.>**

- ① 회사는 총주주의 이익보호 내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대우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는 결의로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전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는 결의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본 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역할, 기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다른 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서의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6 장 기타사항

**제 16 조 (사후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7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이사회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18 조 (간사)

-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 제 19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1998년 4월 30일 제정

서기 1999년 4월 14일 개정

서기 2000년 3월 16일 개정

서기 2002년 3월 25일 개정

서기 2013년 3월 15일 개정

서기 2016년 3월 11일 개정

서기 2017년 3월 24일 개정

서기 2023년 10월 26일 개정

서기 2026년 4월 27일 개정